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1

대 구 고 등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4노183 유사강간, 공갈, 강간
피 고 인	A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준희(기소), 서창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성진(국선)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4. 3. 22. 선고 2023고합625 판결
판 결 선 고	2024. 8. 2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공갈 등 범죄의 피해자로서 고통 받았던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사회경험이 부족하고 신체적으로 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피해 범죄와 거의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공갈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이 사건 각 성폭력 범행까지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2,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서 추가로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인 모친과 대학 신입생인 동생과 동거하며 사실상 가장 역할을 해 온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직업훈련을 받는 등 갱생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장배경, 생활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9337호, 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성년 유사강간
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6년 10개월 20일(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앞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
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 유사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
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
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
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
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정성욱 _____

 판사 박가연 _____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1

판사 박경모 _____